



질병관리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-4호)」 개정 발령 알림

1. 관련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

2. 법정감염병 신설 및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「감염병의 진단기준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 2017-4호)」을 개정·발령(2017.7.17.)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<http://cdc.go.kr> → 알림 → 공고/공시) 참고

- 붙임 1.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개정문)
- 2.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(전문). 끝.



질병관리본부장

수신자 17개시도 보건과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
보건연구사 조승희 보건사무관 연가 감염병관리과 전결 2017. 7. 18.
장 조은희

협조자

시행 감염병관리과-3538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3 / <http://>
총 감염병감시과

전화번호 043-719-7112 팩스번호 043-719-7138 / hoi644@korea.kr / 대국민 공개